

『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(소각, 매립)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시공 및 운영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함

3. 주요 내용

- 위탁재산 현황
 - 건 물 명 :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
 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77-1
 - 규 모
 - 부지면적 : 411,456m² (시설면적 324,400m²)
 - 건축면적 : 9,575.41m², 연면적 : 17,256.83m²
 - 체육공원면적 : 87,056m²
 - 매립면적 : 68,276m², 소각용량 : 200톤/일(100톤×2)
 - 재활용선별시설 : 50톤/일, 침출수처리시설 : 300톤/일
 - 조성비 : 1,184억원 (국비 344, 도비 12, 시비 828)
- 운영보조금 : 5,824백만원[인건비 2,772, 일반운영비 641, 시설관리비 1,501, 기타(이윤및세금) 910]

4. 관련근거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
5. 검토의견

- 환경자원화시설(소각, 매립)의 운영기간이 시공사의 의무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와 시설의 기술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계, 전기, 환경, 화공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하므로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,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6조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